

의료원 예산 및 회계규정

제정 1994. 3. 1
 1차개정 1999. 10. 15
 2차개정 2002. 7. 30
 3차개정 2004. 12. 14
 4차 전면개정 2017. 5. 23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」 제2장에 의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(이하 “의료원” 이라 한다)의 예산 및 회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의료원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하여는 「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」, 「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, 「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」, 「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」, 기타관련 법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예산 및 회계년도) 「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」 제12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4 조(회계구분) 의료원의 예산과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한다.

제 5 조(계정과목) 교비회계 계정과목은 「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을 준용하고, 부속병원 회계 계정과목은 「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」을 준용하되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·항·목 체계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예산의 수립

제 6 조(예산총계주의) 수입 및 지출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, 이를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7 조(관장부서) ① 예산의 편성, 조정, 통제 및 분석보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이 되며, 기획조정실장을 예산관리자로 한다.

②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의 요구 및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의 집행은 소속부서장(이하 “예산사용부서” 라 한다)이 관장한다.

제 8 조(예산편성기준) ① 예산관리자는 매년 익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예산사용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예산편성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경영환경
2. 예산편성기본방향
3. 예산편성절차 및 일정
4. 예산과목별 편성기준
5. 기타 예산안 작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9 조(예산의 요구) 예산사용부서는 제8조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예산의 확정) ① 예산관리자는 각 부문 예산요구서를 종합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, “의료원 운영회의”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안이 확정된 때에는 예산관리자는 이를 예산사용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준예산) 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 회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1. 의료원 교직원의 보수
2. 시설의 유지관리비
3.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
4. 기타 의료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

② 전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③ 전 제1항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추가경정예산) ①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.

제 13 조(예비비)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지출예산에 계상한다.

②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용목적 및 금액을 작성,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.

제 3 장 예산의 통제와 집행

제 14 조(예산의 통제) 모든산 자금의 집행은 예산통제부서의 사전·사후 예산통제를 받아야 한다. 단, 자금의 성질에 따라 자율통제 계정을 둘 수 있다.

제 15 조(예산운영) ① 예산통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주관부서(구매관리팀, 시설관리팀, 의용공학팀 등을 뜻함)는 집행필요성,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통제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무회계팀은 제 지출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.

- 1. 예산통제 확인 유무
- 2. 예산과목의 일치여부
- 3. 기타 관계 부서에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16 조(실행예산) ①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분기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. 다만,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의 특정과목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 17 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.

제 18 조(예산의 전용) ①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9 조(예산의 이월 및 계속) ① 지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계상하고,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.

②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.

제 4 장 기 타

제 20 조(시행규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의료관계 법령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다만, 개원 전에 필요한 때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추진본부 운영에 준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학법대우 제17-129호 : 2017.5.23.)
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